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1·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 설치 및 복지서비스 향상,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가치관 확립 등 복지수요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부서 간 일부 업무조정 등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총　　괄 : 1실, 12과, 2직속, 2사업소, 10읍면, 113담당
→ 2실, 11과, 1단, 2직속, 2사업소, 10읍면, 116담당

나. 한시기구 신설 : 1단 3담당

○ 신설 기구명 : 산업단지개발추진단

○ 존속기한 : 2016년 2월 29일까지

다. 과 명칭변경(5)

○ 주민생활지원과 → 주민복지실

○ 새마을개발과 → 새마을청소년과

○ 지역경제과 → 경제교통과

○ 도시행정과 → 도시건축과

○ 건설안전과 → 건설방재과

라. 담당 신설(+4)

○ 농정과 축산방역담당

○ 새마을청소년과 청소년담당

○ 도시건축과 건축지도담당

○ 산업단지개발추진단 공단조성담당

마. 담당 폐지(△1)

○ 건설안전과 재난민방위담당

바. 담당명칭 변경(6)

○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→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담당
○ 건설안전과 건설행정담당 → 건설방재과 건설안전담당
○ 건설안전과 농업기반담당 → 건설방재과 농촌개발담당
○ 건설안전과 복구지원담당 → 건설방재과 하천담당
○ 농업기술센터 기후변화작물담당 →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담당
○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→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

사. 담당이동(5)

○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담당 → 새마을청소년과 여성아동담당
○ 새마을개발과 식품위생담당 → 경제교통과 식품공중위생담당
○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 → 산업단지개발추진단 투자유치담당
○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→ 산업단지개발추진단 기업지원담당
○ 도시행정과 교통행정담당 →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
나.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721,740천원

○ 일반직 : 60,630천원 × 10명 = 606,300천원
○ 복지직 : 30,000천원 × 2명 = 60,000천원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3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
○ 기능직
・기능9급→기능8급 : (2,360-1,908)×12월×5명 = 27,120천원
・기능9급→기능7급 : (2,844-1,908)×12월×1명 = 11,232천원
・기능9급→기능6급 : (3,332-1,908)×12월×1명 = 17,088천원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3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

다. 기　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개정조례안 : 별첨

(3) 입법예고 : 2013. 2. . ~ 2013. 2. .

(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 1·2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 설치 및 복지서비스 향상과 청소년의 올바른 사회가치관 확립 등 복지수요 증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간 일부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 하고

○ 성주1·2차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 전담 기구인 산업단지개발추진단(1단 3담당)을 신설하고(존속기간 : 2016년 2월 29일까지) “주민생활지원과”를 주민복지실로, “새마을개발과”를 새마을청소년과로, “지역경제과”를 경제교통과로, “도시행정과”를 도시건축과로, “건설안전과”를 건설방재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서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성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성주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등에 따른 우리군의 집행기관의 정원이 535명에서 547명으로 12명이 증원됨에 따른 성주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 : 547명 → 559명(+12)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35명 → 547명(+12)

- 일반산업단지조성 등 지역현안사업 인력증원 10명
-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에 따른 인력증원 2명

○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(변동없음)

나.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

○ 본청 : 254명 → 266명(+12)

○ 의회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(변동없음)

다. 직종·직급별 정원 조정

○ 일반직 : 443명 → 455명(+12)

■ 5급 : 26명 → 27명(+1)

- 산업단지개발추진단(한시기구) 정원책정 : 행정+시설(+1)

■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: 413명 → 424명(+11)

라.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(변동없음)

마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

○ 일반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현 행	5% 이내	17% 이내	22% 이내	56% 이상
조 정	+1.5%	+2%	+8.5%	△12%
개 정	6.5% 이내	19% 이내	30.5% 이내	44% 이상

○ 연구직・지도직 공무원(변동없음)

○ 별정직 공무원(변동없음)

4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(직급별 정원) 및 같은 규정 제30조(정원의 규정)

나.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: 721,740천원

○ 일반직 : 60,630천원 × 10명 = 606,300천원

○ 복지직 : 30,000천원 × 2명 = 60,000천원
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3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

○ 기능직

・기능9급→기능8급 : (2,360-1,908)×12월×5명 = 27,120천원

・기능9급→기능7급 : (2,844-1,908)×12월×1명 = 11,232천원

・기능9급→기능6급 : (3,332-1,908)×12월×1명 = 17,088천원
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3년 공무원 1인당 직접경비

다. 기 타

1) 신・구조문대비표 : 붙임

2) 개정조례안 : 별첨

3) 입법예고 : 2013. 2. . ~ 2. .

(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)

5. 검토의견

○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설명 드렸듯이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이 비대해 짐에 따라 우리군의 행정기구가 증가함으로써 정원 또한 535에서 547명으로 증원됨으로 지역의 현안사업인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10명을 증원하고,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에 2명을 증원하여 본청에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, 그 외 의회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은 변동 없습니다.

○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